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3.12.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중장비 수출시 관련 인증은?

(답변)

규제 개요

일반 중고 승용차와 달리 EXECUTIVE ORDER NO. 156에서 허용하는 일부 중고차는 필리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성격에 따라 DTI 수입허가를 받거나 추가 안전인증, 환경(배출기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O 156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동차(vehicle)”만 해당되며, 중장비의 경우 HS Code상 기계류(Chapter 84 등)로 분류되어 자동차 규제 대상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O 156에서 명시한 수출 가능 특수차량과 기계류로 분류되는 중장비는 적용규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수출제품의 제품 분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특정하지 않으셨고 스펙을 제공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 필리핀으로 중고 특수차·중장비를 수출할 때 자격을 갖춘 필리핀 수입자를 통해 진행되므로 현지 바이어를 통해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비의 경우 각 장비에 따라 HS코드 기반으로 개별규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장비는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지만, 특수차(EO 156 대상)는 세금 + eATRIG + 관세를 모두 준비해야 통관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 (Excavator) - HS Code 8429의 경우, HS 8429 = “건설기계 (Machinery)”로 분류되어 자동차(EO156 적용 대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별도 규제기관이 없어 일반 통관 및 세금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입허가는 불필요하되 eATRIG(세금 승인) 및 통관시 필요한 제출 서류 준비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제품별로 특수한 경우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는 있으나 이는 특수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인증의 성격입니다.

기본 수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수출서류(상업송장, Packing List, Bill of Landing(B/L), 장비서류(장비등록증/ 소유권 증명, 매매계약서), 세관(HS Code 명확히 기재, 장비상세스펙 기재) 등이 있으며, 바이어 요청에 따라 장비상태 관련 정보와 기술 정보(Spec Sheet), 가격 및 조건 등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인증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통관관련 업무입니다. 이는 저희 1381인증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벗어나므로 자세한 사항은 KOTRA나 현지 바이어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매가능한 중고차 분류

필리핀은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판매용 중고차 수입 사업”은 대부분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Executive Order 156 및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지 자동차 산업 보호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중고차를 대량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예외 프로그램만 가능합니다.

중고 승용차 판매용 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민자나 특정비자 소유자에 한해 개인수입을 할 경우, 혹은 상용트럭, 특수차량만 판매용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러한 수출이 가능한 중고 차량의 경우 DTI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ECUTIVE ORDER NO. 156 발췌록

제3조. 중고차

3.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중고차의 수입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국가 전체에 금지됩니다.

3.1.1 귀국 거주자 또는 이민자가 소유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노달러 수입 프로그램 (No-Dollar Importation Program)에 따라 발급된 수입 허가를 받은 차량. 이러한 차량은 최소 3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3.1.2 외교단 공무원의 용도로 사용되며 외교부의 수입 허가를 받은 차량.

3.1.3 픽업트럭을 제외한 트럭:

1. 총중량 2.5~6.0톤으로 DTI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를 받은 차량.
2. 총중량 6.0톤 초과 차량.

3.1.4 버스:

1. 총중량 6~12톤으로 DTI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를 받은 버스.
2. 총중량 12톤 초과 버스.

3.1.5 특수 목적 차량:

소방차
구급차
장례 운구차/장례 마차
크레인 트럭

트랙터 헤드 또는 트랙 트랙터
봄 트랙
유조 트랙
고압 스프레이 건이 장착된 탱크 트랙
냉동 트랙 또는 냉장 트랙
이동식 시추탑
트랜짓/콘크리트 믹서
이동식 방사선 장비
견인차 또는 구난차
콘크리트 펌프 트랙
고소 작업차/버커 평판 트랙
거리 청소부
진공 트랙
쓰레기 압축기
셀프로더 트랙
고소작업차
조명 트랙
특수 목적 장비가 장착된 트랙
특정한 용도로 설계된 그 외 모든 유형의 차량.

제4절. 중고 자동차 수입 감시.

4.1 본 행정명령 제2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4.1.1 산업통상부(DTI)는 모든 중고 자동차 수입을 감시한다. 감시 결과 및 수입의 영향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토 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유형의 자동차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1.2 관세청(BOC)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 이름;
수입업체 주소;
차량 수량 및 송장 금액;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 및 식별 번호;
수입일자;
차량의 평가액;
차량별 관세 분류 및 관세율;
선적물에 대해 납부된 총 세금 및 관세 금액; 그리고
차량 수입과 관련된 기타 정보.

4.1.3 육상교통사무국(LTO)은 수입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다음 정보를 산업통상부(DTI)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자 이름;

등록자의 주소;

차량 수량 및 송장 금액;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 및 식별 번호;

등록일자; 및

차량 등록과 관련된 기타 정보.

해당 정보는 기준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DTI)는 관세청(BOC) 및 육상교통국(LTO)과 협력하여 이 지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1.4 대기오염방지법(RA 8749)의 조항에 따라 모든 수입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판매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육상교통국(LTO)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중고 자동차만 등록합니다.

4.1.5 재무부(DOF)와 교통통신부(DOTC)는 관세청(BOC), 국세청(BIR), 육상교통국(LTO) 및 자유무역지대 관리청과 같은 기타 기관을 포함하여 이 명령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4.1.6 본 명령의 조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모든 기관은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명령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 회람 또는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 출처 EXECUTIVE ORDER NO. 156

<https://www.tariffcommission.gov.ph/eo-156>

관세청 웹사이트 발췌록 일부

3. 중고차는 수입 가능한가요?

자격을 갖춘 중고 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며,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해당 중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되는 중고 자동차는 산업통상부(DTI) 산하 공정거래집행국(FTEB)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CAI)을 소지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실제로 수입하기 전에 CAI(차량등록증)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어떤 중고 자동차의 수입이 허용됩니까?

행정명령 877-A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고 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1. 무달러 수입(NDI) 프로그램에 따른 개인 소유 자동차.
2. 외교단 공무원용 차량(외교부의 수입 승인을 받은 차량).
3. 총중량(GVW) 2.5톤 이상 트럭.
4. 총중량(GVW) 6톤 이상 버스.
5. 특수 목적 차량.
6. 오토바이.

"특수 목적 차량(SPV)"이란 특정 비수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장착하여 특별히 제

작되거나 개조된 차량(예: 소방차, 크레인 트럭, 이동식 방사선 장비, 이동식 시추 장비,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또는 사람이나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특수 유형의 차량(예: 구급차, 장례 운구차 등)을 지칭합니다.

* 출처: 필리핀 관세청 Bureau of Customs > Motor Vehicles, Boats & Yachts

<https://customs.gov.ph/motor-vehicles-boats-yachts/#:~:text=To%20import%20a%20used%20motor%20vehicle%20to,is%20covered%20by%20a%20CAI%20before%20importation\>

※ 유의사항

일반 중고 승용차와 달리 EXECUTIVE ORDER NO. 156에서 허용하는 일부 중고차는 필리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성격에 따라 DTI 수입허가를 받거나 추가 안전인증, 환경(배출기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O 156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동차(vehicle)”만 해당되며, 중장비의 경우 HS Code상 기계류(Chapter 84 등)로 분류되어 자동차 규제 대상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O 156에서 명시한 수출 가능 특수차량과 기계류로 분류되는 중장비는 적용규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수출제품의 제품 분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특정하지 않으셨고 스펙을 제공하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 필리핀으로 중고 특수차·중장비를 수출할 때 자격을 갖춘 필리핀 수입자를 통해 진행되므로 현지 바이어를 통해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ECUTIVE ORDER NO. 156에 따라 수입 가능한 중고차(예외 허용 차량) 수입 규제

▶ 수입 허가 (Import Permit / Authority)

관할: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요구 사항

차량 용도 (특수 목적)

사업 필요성 입증

차량 상세 스펙

대상

EO 156 예외 중고차, 특수 목적 차량(소방차, 구급차, 크레인 트럭 등)

▶ 세금 승인 (eATRIG)

관할: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

eATRIG 발급 필수

→ 중고차라도 세금 감면 없음

세금 미납 시 LTO 등록 및 운행 불가

▶ 통관 (Customs Clearance)

관할: Bureau of Customs (BoC)

HS 코드별 분류 확인
DTI 수입허가 확인
인보이스·선적서류 검증
“중고차 여부” 엄격 심사

필요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장비 스펙

▶ 환경/배출가스 인증

관할: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엔진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연식·차량 상태 심사

▶ 차량 등록 및 운행 허가

관할:

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 - 도로 주행용 등록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 대중교통/운송용 차량 노선 허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Land Transportation Office 등록(LTO)이 필요.
대중교통용이면 LTFRB 허가 필요

▶ 차량 특성별 추가 인증

소방차 / 구조차: 안전 장치 인증

통신 장비 탑재 차량: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승인 필요

▶ 안전/기술인증 (필요시)

특수차(EO 156 대상), 산업용 기계류/중장비 상관없이 제품별 안전요구사항이 적용됨

안전과 관련된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장비류

도로용 크레인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도로용 특수 트럭 장착 크레인

요구 사항

안전 검사
기술 인증
사용 적합성 확인

▶ 기계류/중장비

EO 156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동차(vehicle)”만 해당되며, 중장비의 경우 HS Code상 기계류 (Chapter 84 등)로 분류되어 자동차 규제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굴삭기, 로더, 지게차 같은 중장비는 EO156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법이 적용됩니다.

중장비의 경우 각 장비에 따라 HS코드 기반으로 개별규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장비는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지만, 특수차(EO 156 대상)는 세금 + eATRIG + 관세를 모두 준비해야 통관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굴삭기 (Excavator) - HS Code 8429의 경우, HS 8429 = “건설기계 (Machinery)”로 분류되어 자동차(EO156 적용 대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별도 규제기관이 없어 일반 통관 및 세금만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입허가는 불필요하되 eATRIG(세금 승인) 및 통관시 필요한 제출 서류 준비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제품별로 특수한 경우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는 있으나 이는 특수적인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인증의 성격입니다.

기본 수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수출서류(상업송장, Packing List, Bill of Landing(B/L), 장비서류(장비 등록증/ 소유권 증명, 매매계약서), 세관(HS Code 명확히 기재, 장비상세스펙 기재) 등이 있으며, 바이어 요청에 따라 장비상태 관련 정보와 기술 정보(Spec Sheet), 가격 및 조건 등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인증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통관관련 업무입니다. 이는 저희 1381인증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벗어나므로 자세한 사항은 KOTRA나 현지 바이어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통상산업부 (DTI)에서 관할하는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산업 기계류/중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 DTI > List of Products Under Mandatory Certification

<https://bps.dti.gov.ph/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 수입 허가 (Import Permit / Authority)

관할: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대상

토목·건설 장비, 물류 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허가 필요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단, 차량형 장비는 EO156 적용으로 수입허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처럼 장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인증/허가 여부가 상이하므로 제품별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설 장비 기계류/중장비

굴삭기 (Excavator) - HS 8429

휠로더 (Wheel Loader) - HS 8429

불도저 (Bulldozer) - HS 8429

백호로더 (Backhoe Loader) - HS 8429

그레이더 (Motor Grader) - HS 8429

물류 장비 기계류/중장비

지게차 (Forklift) - HS 8427

리치트럭

핸드링 장비

차량형 장비 특수차(EO 156 대상)

트럭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믹서 트럭

고소작업차(버킷 트럭)

▶ 세금 승인 (eATRIG)

관할: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

모든 중고 장비 세금 평가 필수

없으면 통관 진행 불가

중장비 세금 면제 없음

▶ 통관 (Customs Clearance)

관할: Bureau of Customs (BoC)

인보이스, 선적서류 확인

HS 코드(주로 8429, 8430 등) 분류

수입신고서 제출

통관시 DTI 허가문서 필요 없음

단, 필요서류 미비시 통관 지연 가능

필요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장비 스펙

▶ 환경 인증 (필요 시)

관할: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적용 대상

산업용 장비 기준 준수 필요

배출가스 인증은 일반 산업용 기계는 대부분 적용 제외

※ 중고 엔진 장착 장비 (노후 장비)

배출가스 기준 문제로 수입 제한 또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배출가스 기준 충족

오염 방지 관련 서류

일반 차량보다 덜 엄격한 규제 적용되지만 노후 장비는 문제 생길 가능성 있음.

▶ 현지 등록 / 사용 허가 (필요시)

관할: 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

산업용 장비 도로 주행할 경우 LTO 제한적 등록 필요

산업 현장 내 이동용 장비는 LTO 등록 불필요

▶ 안전/기술인증 (필요시)

특수차(EO 156 대상), 산업용 기계류/중장비 상관없이 제품별 안전요구사항이 적용됨

안전과 관련된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장비류

도로용 크레인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도로용 특수 트럭 장착 크레인

요구 사항

안전 검사

기술 인증

사용 적합성 확인

크레인 / 호이스트 / 리프트 트럭, 고압 압력 장비 (리프트·프레스 등 산업용)

참 고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 정보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인증/표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제품에 대한 필리핀 인증/허가 규제(강제)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출, 통관/관세 관련 업무 및 민간 사기업 규정(e.g. 아마존 내부규정)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코트라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이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보고 싶으시다면 필리핀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기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는 해당 현지 언어(타갈로그어) 지원 인력이 없어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필리핀 KOTRA 마닐라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manila/KTMIUI010M.html>

TEL: ++63 (2) 893-1183, 3244 / FAX: ++63 (2) 817-3369 / manila@kotra.or.kr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3.12.]

원칙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으며,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국내 인증기관

국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 기관 성격의 인증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지원 사업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시흥시 2026년 해외 쇼핑몰(온라인) 입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s=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st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No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BIL_N_00000000119929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6년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si/selectSIA200Detail.do?hashCode=07&rowSel=6&rows=15&page=1&cat=&schPblancDir=&schJndCodeTy=&schWstyAt=&schAreaDetailCode=&schEndAt=N&orderGr=&sort=&preKeyword=&condition=searchPblancNode&condition1=AND&keyword=&plancId=PBIL_N_00000000119929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026년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과 ‘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3.12.]

※ 주 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3.12.]